

# 9. 지적법중개정법률

법률 제5,630호 1999. 1. 18

## 개정 이유

지적약도등간행판매업의 승인제도를 등록제로 변경하고, 토지분할·지목변경 등에 따른 신청의무기간을 연장하며, 지번변경·지적공부반출 등에 대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권을 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등 국민이 재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려는 것임.

## 주요 골자

- 가. 지번변경, 지적공부반출, 지적공부의 재작성 및 축척변경에 대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권을 도지사에게 이양하도록 함(법 제4조제2항·제8조제3항·제14조 및 제27조제1항).
- 나. 지적도 또는 입야도를 복제한 지적약도 등을 간행하여 판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등록을 하도록 함(법 제12조의2).
- 다. 토지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 토지소유자가 소관청에 토지이동을 신청하는 기간을 30일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함(법 제15조 내지 제18조, 제20조 및 제22조).

지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내무부장관”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8조제3항중 "소관청"을 "시·군·구"로 하고, 동항 단서중 "내무부장관"을 "시·도지사"로 한다.

제8조의2제2항중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시·도지사"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의2(지적약도등의 간행 등) ①지적도 또는 임야도를 복제한 약도 등(이하 "지적약도등"이라 한다)을 간행·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적약도등간행·판매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기준·절차 및 등록증의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3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받지 아니한다.

제14조중 "도지사를 거쳐 내무부장관의"를

"시·도지사의"로 한다.

제15조·제16조·제17조제2항 및 제20조중 "30일내"를 각각 "60일이내"로 한다.

제18조제2항중 "30일"을 "60"으로 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제27조제1항중 "내무부장관"을 "시·도지사"로 한다.

제42조의2제6항중 "30일이내에 내무부장관을"을 "90일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을"로 한다.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의2(지적약도등의 간행 등 위반)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지적약도등을 간행·판매하거나, 지적약도등간행·판매업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 및 그 상대방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8조를 삭제한다.

제49조제1항중 "게을리한 자"를 "게을리한 자 또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로 하고, 동조제3항중 "30"을 "60"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제8조제2항, 제8조의2제4항, 제9조제6호, 제10조제5호, 제11조제4호, 제25조제2항제5호, 제30조의2제2항, 제31조제3항 및 제41조제3항 중 "내무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8조의2제3항, 제12조의3제1항 본문, 제28조제2항, 제42조제1항, 제42조의2제7항 및 제44조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 제30조의2제1항, 제42조제2항, 제42조의2제1항·제2항·제4항·제5항·제7항 및 제44조중 “도지사”를 각각 “시·도지사”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적약도등간행·판매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지적약도등의 간행·판매·배포 대행업자로 지정된 자는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적약도등간행·판매업을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